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229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다. 제출일자 : 2016. 5. 30.

라. 회부일자 : 2016. 5. 31.

Ⅱ. 제안이유

○ 혁신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어 현재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기간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자율학교 지정·운영 기간과 일치시켜 혁신학교 운영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고,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기간 개정에 따라 혁신학교의 종합평가 시기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기간을 "<u>4년"에서 "3년 이상 5년 이하"</u>로 개정(안 제3조 제2항)
- 나. 혁신학교의 종합평가 시기를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기간 개정에 맞추어

Ⅳ.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o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제4항(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0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제4항(평가)
- o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지정기간 연장)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 다. 협 의: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 라. 기 타
 - o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 o 입법예고(2016, 4, 6, ~ 4, 27.)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 o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o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별첨 3)
 - o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함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별첨 4))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1229호로 발의되어 2016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 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혁신학교 지정 · 운영기간과 종합평가 시기를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 및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8조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혁신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혁신학교 지정 운영 현황

○ 서울형 혁신학교는 학생·교원·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교육문화 공동체로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 현하고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로 자율학교의 한 유형입니다.

혁신학교는 그동안 '학교선택권'만 중시되어온 교육풍토에서 '학습선택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학력과 인성이 조화롭게 발달하는 전인적 학업성취를 구현하여, 우수학생을 '잘 뽑는' 학교보다는 평범한 학생을 '잘 가르치는' 학교를 목표로 현재 119개 학교(초등학교 76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11개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붙임] 참고).1)

○ 이와 같은 혁신학교는 자율학교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현행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제4항²) 및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¹⁾ 혁신학교 도입 후 총 127개교가 지정·운영되었으나 통폐합한(흥일초+신흥초) 학교를 제외한 7개교는 평가 후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현재 119개교가 운영되고 있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한 훈령」제8조에³⁾ 따라 교육감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운영을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제3조는 혁신학교의 운영 기간을 4년으로 하고 있으며 지정 후 4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조문 검토

- 1) 혁신학고의 지정 운영기간 조정에 관한 의견(안 제3조제2항)
-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은 현행 운영기간을 4년에서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여 교육현장의 운영 현실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이 혁신학교 운영기간을 종전과 달리 탄력적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운영기간의 획일적 고정 화로 말미암아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맞는 운영기간이 보장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특히, 2학기에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1학기까지 만 지원됨에 따라 운영기간 종료시점인 신규 2학기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교육현장의 혼란이 발생될 우려 또한 있을 것으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3)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평가) ① 자율학교는 자체평가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평가(이하 "위원회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급별로 20% 이상의 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로 판단됩니다.4)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이 자율학교 운영기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조치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의 고려와 혁신학교 운영의 일관성 및 통일성 확보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혁신학교 종합평가 시기에 관한 의견(안 제4조제1항)
- 동 개정조례안 제4조는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의 운영기간에 맞게 이 와 관련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마지막 해를 평가시기로 규 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4조는 자율학교 평가에 대한 상위법령 및 조례 내 조문간 통일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 결론적으로

○ 동 개정조례안은 종전 혁신학교의 운영기간 획일화에서 오는 문제점을 상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통한 혁신학교의 안정적 운영기간 확보와 운영지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되는바, 조 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⁴⁾ 현재 2학기 지정으로 운영되는 혁신학교는 18개교로 초등학교가 14개교, 중학교가 4개교임(붙임 참고).

[붙임]

서울형혁신학교 지정 현황

2016.3.1.기준

연번	학교급	공/사립	자치구	학교명	최초 지정연월일	재지정 연월일	종합평가 연월일	연간 평균지원금 (단위: 천원)	재지정 탈락 사유
1	초	공립	서대문구	서울가재울초등학교	2016.3.1			63,400	
2	초	공립	강동구	서울강명초등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102,575	
3	초	공립	강동구	서울강일초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125,082	
4	초	공립	강남	서울개포초등학교	2015.3.1			67,288	
5	초	공립	성동구	서울경수초등학교	2015.3.1			76,888	
6	초	공립	강서구	서울공항초등학교	2012.3.1		2015.5.6.~5.26	101,049	재지정 미신청
7	초	공립	광진구	서울광장초등학교	2015.3.1			73,693	
8	초	공립	동대문구	서울군자초등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94,907	
9	초	공립	성동구	서울금옥초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85,697	
10	초	공립	강동구	서울길동초등학교	2013.3.1		2016.6.3~6.13	101,821	
11	초	공립	관악구	서울난곡초등학교	2015.9.1			53,508	
12	초	공립	관악구	서울남부초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112,745	
13	초	공립	노원구	서울노원초등학교	2015.3.1			72,853	
14	초	공립	영등포구	서울대영초등학교	2016.3.1			63,990	
15	초	공립	은평구	서울대은초등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90,951	
16	초	공립	중구	서울덕수초등학교	2013.3.1		2016.6.3~6.13	70,541	
17	초	공립	노원구	서울덕암초등학교	2016.3.1			63,810	
18	초	공립	도봉구	서울도봉초등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96,711	
19	초	공립	성동구	서울동명초등학교	2016.3.1			56,550	
20	초	공립	동작구	서울동작초등학교	2016.3.1			54,810	

연번	학교급	공/사립	자치구	학교명	최초 지정연월일	재지정 연월일	종합평가 연월일	연간 평균지원금 (단위: 천원)	재지정 탈락 사유
21	초	공립	중랑구	서울면목초등학교	2015.9.1			65,102	
22	초	공립	중랑구	서울면북초등학교	2016.3.1			46,980	
23	초	공립	성동구	서울무학초등학교	2015.9.1			56,799	
24	초	공립	동작구	서울문창초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98,536	
25	초	공립	관악구	서울미성초등학교	2016.3.1			63,630	
26	초	공립	강북구	서울미양초등학교	2015.9.1			55,549	
27	초	공립	금천구	서울백산초등학교	2011.3.1		2014.5.7~5.23	108,965	재지정 미신청
28	초	공립	서대문구	서울북성초등학교	2015.3.1			74,743	
29	초	공립	은평구	서울북한산초등학교	2015.3.1			59,209	
30	초	공립	용산구	서울삼광초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91,242	
31	초	공립	관악구	서울삼성초등학교	2016.3.1			52,680	
32	초	공립	동작구	서울삼일초등학교	2013.3.1		2016.6.3~6.13	96,869	
33	초	공립	강서구	서울삼정초등학교	2015.3.1			72,343	
34	초	공립	노원구	서울상원초등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94,085	
35	초	공립	노원구	서울상천초등학교	2016.3.1			49,530	
36	초	공립	동작구	서울상현초등학교	2012.9.1		2015.12.7~12.8	79,453	
37	초	공립	강남구	서울세명초등학교	2012.9.1		2015.12.7~12.8	77,769	
38	초	공립	강북구	서울송중초등학교	2015.3.1			90,463	
39	초	공립	은평구	서울수리초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81,342	
40	초	공립	노원구	서울신계초등학교	2015.9.1			51,288	
41	초	공립	동작구	서울신길초등학교	2015.3.1			99,342	
42	초	공립	영등포구	서울신대림초등학교	2016.3.1			50,370	
43	초	공립	중랑구	서울신묵초등학교	2016.3.1			61,320	

연번	학교급	공/사립	자치구	학교명	최초 지정연월일	재지정 연월일	종합평가 연월일	연간 평균지원금 (단위: 천원)	재지정 탈락 사유
44	초	공립	양천구	서울신은초등학교	2011.9.1	2015.9.1	2015.5.6.~5.26	92,871	
45	초	공립	성북구	서울안암초등학교	2016.3.1			54,150	
46	초	공립	양천구	서울양동초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91,914	
47	초	공립	양천구	서울양명초등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85,615	
48	초	공립	강서구	서울양천초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85,404	
49	초	공립	양천구	서울양화초등학교	2015.3.1			92,788	
50	초	공립	은평구	서울연천초등학교	2015.3.1			73,798	
51	초	공립	강서구	서울염경초등학교	2015.9.1			61,671	
52	초	공립	강서구	서울염창초등학교	2015.3.1			89,098	
53	초	공립	영등포구	서울영등포초등학교	2015.3.1			71,953	
54	초	공립	구로구	서울영서초등학교	2012.3.1		2015.5.6.~5.26	108,789	재지정 미신청
55	초	공립	성동구	서울옥수초등학교	2015.9.1			47,951	
56	초	공립	광진구	서울용곡초등학교	2016.3.1			63,120	
57	초	공립	서초구	서울우면초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101,671	
58	초	공립	관악구	서울원당초등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87,488	
59	초	공립	성북구	서울월곡초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103,246	
60	초	공립	도봉구	서울월천초등학교	2013.3.1		2016.6.3~6.13	84,231	
61	초	공립	송파구	서울위례별초등학교	2016.3.1			63,400	
62	초	공립	강북구	서울유현초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95,142	
63	초	공립	영등포구	서울윤중초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71,453	
64	초	공립	강남구	서울율현초등학교	2014.9.1			58,497	
65	초	공립	은평구	서울은빛초등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100,167	
66	초	공립	양천구	서울은정초등학교	2015.9.1			48,838	
67	초	공립	강북구	서울인수초등학교	2016.3.1			73,020	

연번	학교급	공/사립	자치구	학교명	최초 지정연월일	재지정 연월일	종합평가 연월일	연간 평균지원금 (단위: 천원)	재지정 탈락 사유
68	초	공립	강남	서울자곡초등학교	2015.3.1			70,933	
69	초	공립	강서구	서울정곡초등학교	2015.3.1			74,143	
70	초	공립	광진구	서울중마초등학교	2015.3.1			86,203	
71	초	공립	구로구	서울천왕초등학교	2011.9.1	2015.9.1	2015.5.6.~5.26	92,295	
72	초	공립	마포구	서울하늘초등학교	2011.9.1	2015.9.1	2014.12.8~12.9	100,579	
73	초	공립	용산구	서울한강초등학교	2016.3.1			44,460	
74	초	공립	용산구	서울한남초등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83,822	
75	초	공립	마포구	서울한서초등학교	2016.3.1			46,890	
76	초	공립	동작구	서울행림초등학교	2015.3.1			72,748	
77	초	공립	성동구	서울행현초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94,889	
78	초	공립	서대문구	서울홍연초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112,875	
79	초	공립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2016.3.1			45,780	
80	초	공립	금천구	서울흥일초등학교	2013.3.1			105,165	2015.3.1. 신흥초와 통폐합
81	중	공립	강동구	강명중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89,207	
82	중	사립	동대문구	경희중학교	2015.3.1			85,738	
83	중	공립	노원구	공릉중학교	2016.3.1			71,460	
84	중	공립	동작구	국사봉중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103,078	
85	중	공립	성북구	길음중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90,901	
86	중	공립	은평구	덕산중학교	2011.9.1	2015.9.1	2014.12.8~12.9	89,129	
87	중	사립	종로구	덕성여자중학교	2016.3.1			49,020	
88	중	사립	성북구	동구여자중학교	2015.3.1			82,003	
89	중	사립	강동구	동신중학교	2012.3.1		2015.5.6.~5.26	115,924	재지정 미신청
90	중	공립	강서구	마곡중학교	2015.3.1			79,948	

연번	학교급	공/사립	자치구	학교명	최초 지정연월일	재지정 연월일	종합평가 연월일	연간 평균지원금 (단위: 천원)	재지정 탈락 사유
91	중	사립	종로구	배화여자중학교	2013.3.1		2016.6.3~6.13	81,936	
92	중	공립	도봉구	북서울중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101,651	
93	중	공립	강서구	삼정중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100,703	
94	중	공립	중랑구	상봉중학교	2016.3.1			68,850	
95	중	공립	서초구	서초중학교	2011.9.1	2015.9.1	2014.12.8~12.9	88,938	
96	중	공립	마포구	성서중학교	2016.3.1			63,150	
97	중	사립	용산구	성심여자중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72,351	
98	중	공립	송파구	송례중학교	2015.9.1			46,477	
99	중	공립	강서구	송정중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88,552	
100	중	공립	노원구	수락중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94,278	
101	중	공립	서초구	수서중학교	2016.3.1			58,680	
102	중	공립	성북구	숭곡중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93,551	
103	중	공립	구로구	신도림중학교	2011.3.1		2014.5.7~5.23	129,328	재지정 미신청
104	중	공립	서대문구	신연중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96,224	
105	중	공립	중랑구	신현중학교	2015.3.1			94,033	
106	중	공립	금천구	안천중학교	2011.3.1		2014.5.7~5.23	122,988	재지정 미신청
107	중	공립	양천구	양서중학교	2015.3.1			88,303	
108	중	공립	구로구	영림중학교	2015.3.1			95,353	
109	중	공립	구로구	오남중학교	2016.3.1			61,470	
110	중	공립	구로구	오류중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118,325	
111	중	공립	서대문구	인왕중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103,291	
112	중	공립	중랑구	장안중학교	2016.3.1			65,910	
113	중	공립	중랑구	태릉중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99,686	
114	중	공립	금천구	한울중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119,649	

연번	학교급	공/사립	자치구	학교명	최초 지정연월일	재지정 연월일	종합평가 연월일	연간 평균지원금 (단위: 천원)	재지정 탈락 사유
115	중	리	성동구	행당중학교	2011.9.1	2015.9.1	2014.12.8~12.9	83,870	
116	고	괺	양천구	금옥여자고등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148,616	
117	고	괺	금천구	독산고등학교	2016.3.1			107,620	
118	고	사립	종로구	배화여자고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130,122	
119	고	공립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125,803	
120	고	공립	강동구	선사고등학교	2011.3.1	2015.3.1	2014.5.7~5.23	120,187	
121	고	공립	중랑구	신현고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144,859	
122	고	공립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133,371	
123	고	공립	송파구	잠일고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121,464	
124	고	립 공	중랑구	중화고등학교	2012.3.1		2015.5.6.~5.26	149,940	재지정 미신청
125	고	사립	노원구	한국삼육고등학교	2015.3.1			144,858	
126	고	공립	도봉구	효문고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133,440	
127	고	공립	동대문구	휘봉고등학교	2012.3.1	2016.3.1	2015.5.6.~5.26	124,013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6.5.29.] [법률 제14158호, 2016.5.29., 일부개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6.3.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타법개정]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 교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 4. 특성화중학교
-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14.2.25.] [교육부훈령 제35호, 2014.2.25., 일부개정]

- 제8조 (평가) ① 자율학교는 자체평가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평가(이하 "위원회 평가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 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급별로 20% 이상의 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⑥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정기간 연장) 제8조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절차와 동일하다.